

2020년 제4회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

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
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17일

원주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규모

분야	구분	직급	인원	예정 직무내용	비고
합계			11명		
행정	신입	9급(주임)	2명	○ 공단 행정업무 전반	
환경	신입	9급(주임)	1명	○ 공단 시설관리(환경) 관련 업무 전반	
토목	신입	9급(주임)	1명	○ 공단 시설관리(토목) 관련 업무 전반	
체육 (수영지도)	신입	9급(주임)	2명	○ 수영강습·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	
운전 (공영버스)	신입	9급(주임)	3명	○ 공영버스 운전 등	보훈
운전 (콜택시)	신입	9급(주임)	2명	○ 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등	보훈

□ 공통요건

○ 거주지

- 행정: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일에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
혹은 기준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던 기간이
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

- 운전(공영버스·콜택시):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일에
강원도에 두고 있는 자 ※보훈전형

- 환경·토목·체육(수영지도): 제한없음

○ 성별·학력: 제한없음

○ 연령: 만 18세 이상(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)

○ 병역: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
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※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포함

○ 공단의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결격사유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8. 공무원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·직원(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 임·직원이라 한다)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1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·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
1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
15.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

□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

○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

채용분야 (직급)	자격기준	비고
행정9급	○ 자격·경력 제한없음 ※거주지 제한(원주)	
환경9급	○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	
토목9급	○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	
체육9급 (수영지도)	○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에 위반사항이 없는 자 ○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에 위반사항이 없는 자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생활체육지도자 2급(수영) 이상 자격 소지자 ②수상안전 자격 소지자 ※대한적십자사 또는 대한수영협회 주관	
운전9급 (공영버스)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에 의거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은 자 ※관련 법률에 의거 고용인원의 5배수 이내 추천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종대형면허 보유 및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②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③공고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“적합” 판정을 받은 자 ※상세내용 서류제출란 참고 ※거주지 제한(강원)	보훈
운전9급 (교통약자 콜택시)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에 의거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은 자 ※관련 법률에 의거 고용인원의 5배수 이내 추천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종보통면허 이상 보유 및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②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③공고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“적합” 판정을 받은 자 ※상세내용 서류제출란 참고 ※거주지 제한(강원)	보훈

※ 제출서류(경력증명서·자격증 등) 내용으로 상기 응시 자격기준을 증빙해야 함.

3

시험방법

【일반직9급】 ⇨ 행정 ※신입직 공개경쟁

1차(서류전형) 응시자격 적합여부	⇨	2차(필기시험) 전공시험 (상식·국어·행정법)	⇨	3차(면접시험) 대면구술심사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구분	배점안내										
1차 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※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 제한 가능 										
2차 필기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과목</th> <th>문항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상식</td> <td>20문항</td> <td rowspan="3">시험시간 60분</td> </tr> <tr> <td>국어</td> <td>20문항</td> </tr> <tr> <td>행정법</td> <td>20문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격자 선발방법: 과목당 40%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, 가점이 합산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○ 합격인원 산정: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※단,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의 40% 이상 득점한 인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 만큼 면접시험 응시자를 결정 ○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) 	과목	문항	비고	일반상식	20문항	시험시간 60분	국어	20문항	행정법	20문항
과목	문항	비고									
일반상식	20문항	시험시간 60분									
국어	20문항										
행정법	20문항										
3차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 점 : 100점(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) ○ 평정방법 : 응시직무 이해도, 전문성, 의사표현 등 평정요소를 각각 “상(20~16점)”, “중(15~11점)”, “하(10점이하)”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○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										

※ 최종합격자 결정 : 필기시험 70% + 면접시험 30%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

【일반직9급】 ☞ 환경·토목·체육(수영지도) ※신입직 공개경쟁

1차(서류전형) 응시자격 적합여부	⇨	2차(필기시험) NCS 직업기초능력검사	⇨	3차(면접시험) 대면구술심사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구분	배점안내						
1차 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※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 제한 가능 						
2차 필기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과목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문항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NCS직업기초능력검사</td> <td>40문항</td> <td>시험시간 60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NCS: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 ○ 합격자 선발방법: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, 가점이 합산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○ 합격인원 산정: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※단,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0점 이상 득점한 인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 만큼 면접시험 응시자를 결정 ○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) 	과목	문항	비고	NCS직업기초능력검사	40문항	시험시간 60분
과목	문항	비고					
NCS직업기초능력검사	40문항	시험시간 60분					
3차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 점 : 100점(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) ○ 평정방법 : 응시직무 이해도, 전문성, 의사표현 등 평정요소를 각각 “상(20~16점)”, “중(15~11점)”, “하(10점이하)”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○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						

※ 최종합격자 결정 : 필기시험 50% + 면접시험 50%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

【일반직9급】 ☞ 운전(공영버스·콜택시) ※신입직 제한경쟁(보훈)

1차(서류전형)	⇨	2차(면접시험)
응시자격 적합여부		대면구술심사

구분	배점안내
1차 서류전형	<p>○ 국가보훈처(강원서부보훈지청) 추천자 中 공고일 전일 기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</p> <p>※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 제한 가능</p> <p>※기본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(보훈특별고용)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.</p>
2차 면접시험	<p>○ 배 점 : 100점(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)</p> <p>○ 평정방법 : 응시직무 이해도, 전문성, 의사표현 등 평정요소를 각각 “상(20~16점)”, “중(15~11점)”, “하(10점이하)”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</p> <p>○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</p>

※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100%로 고득점자순

□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 운영

○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취소 등 결원 발생 시 면접응시자 중 최종 성적순으로 직종별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

※ 단,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제외하며, 면접응시자로 총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가능

4 시험일정

시험단계	시험일정	시험안내
채용공고	11. 17.(화) ~ 12. 07.(월)	원주시청 및 공단 홈페이지 채용전용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
원서접수	11. 30.(월) ~ 12. 07.(월)	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접 수 처: 채용전용 홈페이지 (http://wfmc.torc.co.kr) 접수마감: 12. 07.(월), 18:00
서류발표	12. 09.(수)	공단 홈페이지 채용전용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
필기시험	12. 12.(토)	필기장소: 관내 중·고등·대학교
필기발표	12. 15.(화)	공단 홈페이지 채용전용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
면접시험	12. 21.(월)	면접장소: 공단 회의실
최종발표	12. 23.(수)	공단 홈페이지 채용전용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

※ 세부일정은 공단의 사업운영 및 코로나19(감염병)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

5

가산점 적용

- 적용대상: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
- 적용기준: 매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(취업지원대상자 자격 가산은 필기·면접 각 시험마다 가점)
-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대 상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	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각 법률의 가점기준에 따름	전형단계별 가산
자격증	변호사, 노무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10%	

가점 관련 유의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·자격증 가산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고, 분야별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%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,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소관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
-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
- 가점을 자격으로 하는 경우는 가점부여를 할 수 없음.

6

근무조건

신 분: 공단 일반직 직원 (실무수습기간 3개월 적용)

정년기준: 60세

임 용 일: 2021. 1. 4.일자 근무투입(예정) ※변동가능

근무장소: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내

근무시간: 1일8시간 / 주40시간 근무

※ 단, 공단 사업운영상 채용분야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근무시간은 근무시설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. 필요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

보 수

- 1) 기본급: 일반직공무원 보수표 준용
- 2) 정액급식비: 140,000원
- 3) 직급보조비: 145,000원
- 4) 명절휴가비: 기본급×120%(60%씩 2회)
- 5) 성과급: 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
- 6) 가족수당: 일반직공무원 금액 준용

※ 개인별 호봉 및 근무형태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변동이 가능하며, 해당분야의 경력보유 조건을 응시자격으로 정한 경우에도 「원주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」 별표2에서 정한 경력만 호봉에 반영하고, 그 밖의 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며,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
「원주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」 확인법

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“정보공개” 게시판 → “정관·규정” → 보수규정 확인
 공단 홈페이지 링크: <https://wfmc.wonju.go.kr/sports/index.do>

※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.

□ 서류제출시 유의사항

- 1)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, 저장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3) 지원서에는 반드시 **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**하시기 바라며, **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,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으니,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최초 원서접수시(온라인 작성 및 첨부)

- 응시원서 1부(채용홈페이지 작성)
- 자기소개서 1부(채용홈페이지 작성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채용홈페이지 작성)
- 서약서 1부(채용홈페이지 작성)
-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※결격사유 조회용
-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이력 및 男병역사항 포함) 1부 ※공통요건 확인용
-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 ※분야별 자격요건 확인용
- 경력(재직)증명서 1부(해당자) ※분야별 자격요건 확인용
 - 채용분야 관련 경력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, 폐업으로 인한 경력은 미인정
 - 반드시 기간별 직급·근무부서·담당업무·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내용 포함
 -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양식(별지5)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) ※보훈 및 취업지원가산점 확인용
- 기타 해당분야 관련 추가서류(해당자)

[공영버스·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분야 추가서류]

- 1) 운전경력증명서 1부 ※경찰서 및 민원24홈페이지 발급가능
 - 증명서 발급시 [운전면허경력·법규위반·교통사고] 3가지 항목 모두 “전체경력”으로 발급 (단,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)
 - “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”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, 또한 해당기간 중 면허 정지·취소 등 없이 5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. (공고일 전일 기준)
- 2)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※교통안전공단 주관
 - 공고 마감일 기준(2020.12.07.)기준 3년 이내 결과가 “적합” 판정인 경우에만 유효
 - ※재발급 서류라도 검사일이 2017.12.07.이후라면 재발급과 관계없이 유효한 서류로 인정

□ 최종합격자 등록시

-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
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마감일 18: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원분야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(중복지원 불가)
- 응시원서 허위·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,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, 향후 별도로 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예비합격자(면접응시자)는 다음 각 호의 임용 및 합격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, 예비합격순위 순으로 임용 가능합니다.
 - 가. 임용 전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체검사(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)불합격
 - 나. 임용 후 결격사유 발생 및 자격기준 미달 사실 발견(임용취소)
 - 다. 최종합격자 임용(등록) 포기 및 6개월 내 퇴사
 - 라. 응시자의 거짓 혹은 응시자격 서류 증빙불가로 인한 부정합격 확인(합격취소)
 - 마.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

※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결정되면 개별 연락
-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, 2순위 응시자격 기준 상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, 3순위 응시직무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 근거, 응시자뿐만 아니라 채용과 관련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류를 반환합니다. (단, 전자파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)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재공고를 게시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 문의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채용시스템 내 “Q&A”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(☎070-4324-55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